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  
고서

1993. 8. 6  
行政財務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3年 7月 28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 1993年 8月 2日 回附
- 다. 上程日字 : 第19回 永登浦區議會(閉會中)第2次 行政財務委員會(1993年 8月 6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財務局長 梁大雄)

가. 提案理由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재조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국가유공자의 구세과세면제대상 범위를 “상이군경”에서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로 확대하여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하여 면제토록 개정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専門委員 姜性熙)

- 가. '93. 8. 2 영등포구청장이 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 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는 2급 상이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

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갈음하여 시달된 개정안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상이자의 복지증진을 감안하여 요청안 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9

제출년월일 : 1993. 7. 2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재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국가유공자의 구세과세면제 대상 범위를 “상이군경”에서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로 확대하여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면제토록 개정

3.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4.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명 중 “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를 “자동차의구세”  
로 한다.

제1조 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  
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하고,  
“이하같다)이”를 “이하같다)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  
급증명서를 당해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  
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별 표】

##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급 수	분 류 번 호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 급	108, 109, 111, 112, 113, 504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 급 (복 합 호수자)	1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제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 자동차의 구세 --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 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 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 이군경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 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 ----- -----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 ----- -----
제 2 조(면제대상)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 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cc이 하로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 2 조(면제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 ----- ----- 이하 같다)가-- -----
제 3 조(면제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조(면제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 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 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 표】  
(현 행)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

급 수	분 류 번 호
2 급	14, 79, 98, 99, 102, 104, 105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 급	108, 109, 111, 112, 113, 504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 급 1 항 (복합호수자)	35, 36,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6 급 2 항 (복합호수자)	16, 30, 32, 37, 39, 40, 44, 47, 49, 50,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2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됨.

(개정안)

##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급 수	분 류 번 호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 급	108, 109, 111, 112, 113, 504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복합 호수자)	1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